

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변경인가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 7일
신청인	상호(대표자 성명)	사업자(법인)등록번호
	주소(소재지)	전화번호
신청내용	변경 전	
	변경 후	
	변경사유	

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4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의4제1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국토교통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1. 신·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2.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. 자동차 대수를 늘리는 경우에는 차고지 및 운송부대시설 등의 위치 및 수용능력을 적은 서류	수수료 증차: 기본 5,000원 자동차 1대당: 2,000원 추가 기타: 2,000원
------	---	--

